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2.11.2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 제안이유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서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동대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사업 운영 관련 재료비, 예산, 서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마.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28조, 제117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고(붙임 2)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9. 28. ~ 10. 18.) 결과: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수용(안 제3조에 조손가정 추가)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¹⁾을 대상으로 생활 속 소규모 주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념은 법정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65세 이상 노약자 세대, 조손가정, 주거취약 지대에 사는 여성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임

-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이 서울시 타 자치구 대비 높은 곳으로 다양한 주민복지사업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 취약계층 현황]

(단위: 가구, 2022년 10월 기준)

계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조손가정	중증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
62,172	22,218	1,668	1,897	23	11,889	24,477

-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사업은 법정 취약계층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약자 세대, 조손가정 등 주거취약 계층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주거 불편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주민복지증진 사업으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조례안은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대상자,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구성, 임무, 사무의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및 내용]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약자의 주거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정의)	생활민원을 “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 으로 정의함
제3조 (대상자)	지원 대상자를 강서구에 주소를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함

조 문	규 정 사 항
제4조 (기동대의 구성)	구청장은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및 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
제5조 (기동대의 운영)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름을 명시함
제6조 (기동대의 임무)	가정 내 전기·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소규모 집수리, 그밖에 불편사항 등으로 기동대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함
제7조 (재료비)	생활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하며, 법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및 65세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은 무상으로 처리함을 규정함
제8조 (장비 및 예산확보)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해야함을 명시함
제9조 (서류 등 관리)	기동대는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자재출납장 등을 갖추어 기록관리를 해야함을 명시함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기동대 이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음을 명시함
제11조 (사무 위탁)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함

나. 세부 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주거약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안 제2조는 생활민원에 대한 정의를 강서구민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 으로 규정함
- 안 제3조는 생활민원처리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 전용 신고창구 및 처리기구인 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생활민원의 당일처리 원칙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기동대가 처리하는 생활민원으로는 가정 내 전기·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소규모 집수리, 그 밖에 불편사항으로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함을 명시함
 - 이는 광범위한 수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 등은 제외함으로써 생활민원처리 서비스를 소규모 주거불편 사항의 수리·교체 등으로 한정함
- 안 제7조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법적 취약계층 및 65세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은 무상으로 처리하게 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기동대는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자재출납대장 등을 갖추고 기록 관리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10조는 기동대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²⁾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사업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민원 처리 사업은 같은 항 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해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사업 시행에 있어 구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먼저, 소규모 주거불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 지원 횟수, 지원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며, 돌봄 SOS사업, 희망 집수리 사업 등 기존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과 중복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련 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구민들이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등 소요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생활민원처리 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되, 매년 인건비 인상률과 재료비 구매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구비)	393,367	360,367	368,367	376,367	1,498,468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합계)	393,367	360,367	368,367	376,367	
인 건 비	234,367	234,367	234,367	234,367	
운 영 비	95,000	99,600	105,000	110,100	
재 료 비 등	64,000	26,400	29,000	31,900	

※ 산출 근거

- 1) 인건비: 운영인력(5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 다급 1명)
- 2) 운영비: 생활민원처리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 3) 재료비: 서비스물품 재료구입비 및 센터 조성비(2023년만 40백만원 반영)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합계
구비	393,367	360,367	368,367	376,367	1,498,468

6. 작성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과장 김성태

(담당: 사회7급 이현우 / ☎ 2600-6442)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